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지정 96건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지정 건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 변경 신청 수용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내용 변경 신청(1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시 제외한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등

또한,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와,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증대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을 승인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96건)	국민은행 등 43개사*(43건) * (은행)14개사, (금투)3개사, (단위조합)26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5건) *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알파브릿지, 에이피더핀, 패스트 포워드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한은행 및 신한저축은행(1건)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
	신한은행 및 이나인페이(1건)	이나인페이 SOL글로벌 통장 & 체크카드 서비스
	국민은행 및 에스에스지닷컴(1건)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쓱KB은행')
	하나은행 등 4개사(4건)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NH투자증권 등 4개사(5건) * 엔에이치투자증권(2건), 토스증권, 교보증권, 아이엠뱅크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96건)	신한은행 등 11개사(16건) * 신한은행,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디비금융투자, 라이나생명(2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아이엠캐피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디비 생명보험, 하나은행(5건), 제이비 우리캐피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노무라금융투자 등 8개사(19건) *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증권, 한국씨티은행(4건), 쿠팡페이(5건), 쿠팡파이낸셜(5건), 나이스디앤비, 엔에이치투자증권, 토스증권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경남은행(1건)	
지정내용변경 수용(1건)	삼성증권(1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내용)사용데이터 범위 변경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마 순 (02-2100-2841)
<공동>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김혜수 (02-2100-287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공동>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윤세열 (02-2100-2961)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02-2100-2952)
<공동>	금융위원회 안전과	책임자	서기관	김영민 (02-2100-2573)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02-2100-2975)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이수인 (02-3145-7125)
			팀 장	김현돈 (02-3145-7130)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최동우 (02-3145-8022)
		담당자	팀 장	이윤선 (02-3145-8040)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노영후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현은하 (02-3145-7474)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설재훈 (02-3145-7600)
<공동>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양승의 (02-3145-6717)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책임자	국 장	김옥배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김현정 (02-3145-5685)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96건) >**①~④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43건)**

(국민은행 등 43개사*)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은행, iM뱅크,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14개사)

(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3개사)

(단위조합) 군자농협, 남동농협, 남서울농협, 남인천농협, 대구축산농협, 부산양돈농협, 북서울농협, 서서울농협, 서울강동농협, 서울경기양돈농협, 서울서남부농협, 서울우유농협, 서울축산농협, 송파농협, 수원농협, 수원축산농협, 순천농협, 영동농협, 영등포농협, 제주시농협, 중앙농협, 태안농협, 한국양계농협, 동서울농협, 천안농협, 안동농협(26개사)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하는 한편, 정책성보험인 풍수해 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토록 하여 정책성보험 활성화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40조 제6항 등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에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판매 비중 완화*와, 정책성보험 활성화 등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토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업권별 실질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고려하여 33%~75%로 결정
'25년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26년 적용될 판매비중 비율을 결정

[기대 효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특정 보험사 실적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및 공정경쟁(판매비중 비율 및 특정회사 판매집중 방지 등) 확보를 위해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44~48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5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알파브릿지, 에이피더핀, 패스트포워드)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 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①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2조제1항
②금융소비자보호법제11조,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③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④신용정보법 제11조제1항

①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불가능한 법인에게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③둘 이상의 금융회사 상품에 대한 법인의 투자 권유 및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광고(개별 펀드에 대한 광고는 특례 미부여), ④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간편하게 여러 펀드상품을 비교하여 적합한 펀드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대한 접근성·매력도가 제고되며 펀드판매업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 절감을 유도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대가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기존의 판매방식 대비 중개단계가 복잡해지고,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소비자 피해·이해상충 등을 감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하는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49 신한 상생 대환대출 대한 서비스(1건)

(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은행이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은행권 이동이 가능한 차주를 자체 선별하여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호1항[별표6]4.가.

현재 은행·저축은행간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이 차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로 인해 신한저축은행 차주의 신한은행 대환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 서비스에 대해 차주단위 DSR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한저축은행 차주가 신한은행으로 대환시, 은행권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준수 필요

** 신한저축은행 차주의 DSR 수준이 은행권 규제비율(40%)을 초과하는 경우(예. 45%)에도 신한은행으로 대환 가능

[기대 효과]

은행이 2금융권 차주 중 은행권 대환이 가능한 차주를 발굴하여 이자상환부담 경감 및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동 서비스가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서비스 이용 대상 및 규모를 관리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규제 우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운영시 동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하여야 합니다.

50 SOL글로벌통장 & 체크카드 서비스(1건)

(신한은행-이나인페이)

[서비스 주요내용]

이나인페이를 이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제휴 계좌(‘SOL글로벌 통장’)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이나인페이가 신한은행 통장(제휴계좌상품)을 광고하고,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언어적 제약이나 개인정보 입력의 불편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회원들이 이나인페이에 既등록한 고객정보를 계좌 개설시 활용할 수 있고,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화면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 이용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나인페이 앱은 한국어 외 17개 언어로 지원 가능하며, 신한은행은 한국어 외 15개 언어로 개설 화면 등 지원

[주요 부가조건]

현행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금융거래,개인신용)의 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련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51 **쇼핑몰 이용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 상품 서비스(1건)**

(국민은행-에스에스지닷컴)

[서비스 주요내용]

①에스에스지닷컴의 쇼핑몰이용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의 파킹통장 개설을 중개하여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제휴 계좌에 보관, ②에스에스지닷컴 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 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셀러 전용 관리 채널에서 국민은행의 파킹통장 개설을 중개

[특례내용] ①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②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①에스에스지닷컴 쇼핑몰에서 국민은행의 제휴계좌를 광고하고 제휴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업무와, ②쓱닷컴 쇼핑몰이 계좌이체 업무 일부(이체지시전달)를 제휴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에스에스지닷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국민은행 파킹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현행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허용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에스에스지닷컴 쇼핑몰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어 시장 안정을 위한 제휴 혜택 및 규모의 제한 등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오인방지, 제휴규모 및 혜택제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관련규제 적용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52~55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4건)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메리츠증권, 대신자산운용)

※ 2024.11.13. 34개사 既지정 완료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에 운영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클래스 : 동일 펀드 내에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6조제8항,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4조제1항, 제89조제2항제2호, 제180조제2항, 제180조의2제1항, 제180조의3제1항, 제188조제4항,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390조, 제393조, 제41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제187조제1항, 제188조제4호, 제270조제3항

AP(지정참가회사, Authorized Participant)·LP(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제고되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①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상장클래스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 및 예탁원과의 업무 협조)을 마련하도록 하고, ②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유동성 공급시 헤지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을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56~76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21건)

(NH투자증권^(2건), 토스증권, 교보증권,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디비투자증권, 라이나생명^(2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아이엠캐피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디비생명보험, 하나은행^(5건), 제이비우리캐피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가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대고객 및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전산실(IaaS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이용자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질의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① (NH투자증권^(2건)) 고객의 재무상황, 투자 목표 등 조건에 맞는 투자전략, 요약정보 제공 서비스
- ② (토스증권)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종목을 실시간 번역 요약 정보 제공
- ③ (교보증권) 생성형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 ④ (아이엠뱅크)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대면 대화형 재무상담 및 PB 서비스 제공
- ⑤ (신한은행)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로부터 문서 정보의 자동 추출 등 수기 업무 자동화
- ⑥ (SCI평가정보) 기술신용평가(TCB) 보고서 작성 시 생성형 AI를 활용
- ⑦ (DB투자증권) 사내 업무지식을 검색하여 빠른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하는 서비스
- ⑧ (라이나생명) 임직원이 필요한 답변을 챗봇 형태 서비스
- ⑨ (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생성형 AI를 통해 자동 교정하는 서비스
- ⑩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보험 약관 및 Q&A 데이터 검색 가능한 AI 검색서비스
- ⑪ (아이엠캐피탈) 고객 및 임직원이 문의할 수 있는 챗봇 형태의 'FAQ 서비스'
- ⑫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채팅상담 고객의 보장분석 정보 제공과 상담 내역 자동요약 서비스
- ⑬ (DB생명보험) 사내 업무지식을 검색하는 챗봇 서비스
- ⑭ (하나은행^(4건)) 임직원 대상으로 ①업무 내규 및 정책금융 지식 상담, ②대출 계약서 체크리스트 생성, ③소비자 보호 AI 광고 심의 솔루션, ④글로벌 내규 법령 번역 제공

- ⑮ (하나은행) 보안 위협 정보 및 보안 이슈 뉴스의 자동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위협 요소가 포함된 시스템을 식별하여 사전 대응
- ⑯ (제이비우리캐피탈) 기업정보 수집·분석 등 대출(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 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금융소비자 및 설계사에게는 상품/보험 용어에 대한 용어 전환 및 해설을 지원하고, 임직원은 업무 지식정보 등을 제공

[주요 부가조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생성형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 ① 생성형 AI 운영·관리 보안대책, ② 생성형 AI 모델(가명정보 입력유무 포함)의 보안대책, ③ 내부 단말기 보안대책(모바일 포함), ④ 내부망↔외부 AI 모델 연계 네트워크 보안대책(암호화 등)

77~96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20건)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씨티은행^(4건), 쿠팡페이^(5건), 쿠팡파이낸셜^(5건), 나이스디앤비, NH투자증권, 토스증권, 경남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금융회사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 ① (노무라금융투자) 클라우드 기반 급여 관리 서비스 사용
②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서비스 사용
③ (한국씨티은행/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서비스 사용
④ (한국씨티은행^{3건}) 임직원 교육 및 외주인력 관리, 세일즈 정보 관리 서비스 사용
⑤ (나이스디앤비)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서비스 사용
⑥ (엔에이치투자증권/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협업 도구 사용
⑦ (토스증권/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고객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고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솔루션 사용
⑧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접근 및 권한 통제 등을 위한 보안관리솔루션 사용
⑨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시스템 별 사용자 인증 등을 위한 보안관리솔루션 사용
⑩ (경남은행)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M365 및 Copilot 사용

[주요 부가조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 ①내부 단말기, ②내부망↔SaaS 연계구간, ③SaaS 서비스 관리, ④SaaS 운영정책 등의 항목을 포괄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 구성, 개인(신용)정보 업로드 여부 및 모니터링 대책, 망분리 예외에 대한 보안대책 등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수용 (1건) >

①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삼성증권)

[서비스 개요] ('24.11월 최초 지정)

고객 대상으로 MS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MS Azure OpenAI)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지정내용 변경 수용]

삼성증권은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한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사용데이터 범위와 관련한 지정내용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승인 사항 이외의 부가조건 등은 최초 심사내용과 동일